**‘SSTK’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부는 ‘태권도부(SSTK)'(이하 본 부)라 칭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① 본 부는 숭실대학교 재학생의 체력증진과 태권도인 양성을 위하며 부원 상호간 친선도모 및 동아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 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차기 회장은 회장이 간부 및 부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본 부는 다음의 간부를 둔다.

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서기 1명, 총무 1명, 기장 1명, (또한, 필요에 의해 각 부장을 둘 수 있다.)

**제 4조 [집행부]**

① 집행부는 임원진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되며, 집행부원은 임원진이 선임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① 집행부 회의는 집행부와 월 2회 이상 진행한다.

②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① 본 부의 부원자격은 숭실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.

② 본 부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.

1. 부원은 부칙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2. 부원은 본 부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집행부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정식 동아리 활동 전의 기간에 한해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① 본 부의 의무행사는 연 5회로 한다.

창립제(5월 넷째 주), 전지훈련, 체육대회(9월 첫 주), 전국대회, 겨울나들이(12월 넷째 주)

② 본 부의 정기행사는 총회와 본 부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.

개강총회, 종강총회, 신입생환영회, 벚꽃사진, 교류전, 엠티, 시범, 국기원

➂ 일정은 학사일정을 참고하고 부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날짜로 변경이 가능하다.

**제 2조 [총회]**

① 본 부는 총회를 한 학기에 4번 진행한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① 본 부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① 회비는 연 60,000(육만 원)으로 한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① 총무는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확정된 부칙은 즉시 공포하며,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
\* 16년 회장 김기태 제정

\* 17년 회장 류명석 개정

- 제8장 20조(정기운동) ; 신입생 주 3회 이상 참여를 주 2회 이상으로 개정한다.

\* 19년 회장 유국현 개정

- 제3장 제6조(구성), 제8조(임무), 제9조(임기),

- 제9장 제20조(정기운동)

\* 23년 회장 정민지 개정

- 제4장 제2조(총회)

- 제5장 제3조(결산보고)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